

'25년 귀속 양도소득세,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

- 국세청, 확정신고 안내 대상 22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-

1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

- (신고대상) '25년에 부동산,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.
 -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.
- (신고기한) '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'26년 6월 1일까지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
- (신고안내)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*에게 5월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.
 - * 부동산 1만명, 국내주식 1만 6천명, 국외주식 18만 2천명, 파생상품 1만 1천명
 -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- (신고납부) 홈택스(PC)·손택스(모바일)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거나,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.
 -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*·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,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다.
 - *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(납부세액의 0.7%, 체크카드는 0.4%)는 납세자가 부담
 -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*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.
 - *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,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% 분납 가능

2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

- (예정신고 미리채움)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(세율 선택 도우미)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물건, 취득·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 해주고,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·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- (신고도움자료) 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동영상¹⁾을 게시하였으며 전자신고 가이드²⁾를 내려받거나 출력해서 볼 수 있다.
 - 1) 홈택스 > 세무 업무 가이드맵(메인화면 오른쪽 아래) > 양도소득세 > 영상자료
 - 2) 홈택스 > 세금신고 > 양도소득세 신고 > 신고도움 자료 조회 >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> 전자신고 가이드
-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을 제공하여 과소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*도 게시하였다.
 - * 홈택스 > 세금신고 > 양도소득세 신고 > 신고도움 자료 조회 >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
- (증빙서류 간편제출)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*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다.
 - * 홈택스 > 세금신고 > 신고서 조회/삭제/부속서류 > 신고부속서류 제출 > 조회하기 > 첨부하기 > '가상팩스번호 발급' 클릭

3 신고 유의사항

-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*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.
 - *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에 한하여 신고 의무가 있지만,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함
-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(국내 증권회사 등)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,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·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.
-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(6.1.)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%의 무신고 가산세,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.022%(1일)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.

4 당부 말씀

- 최근 부동산 시장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운계약서 작성, 필요 경비 허위 계상, 비과세·감면요건 부당 적용,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.

| 자주 적발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유형 |

- ◆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축소해 신고한 사례
- ◆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거나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하여 양도차익을 축소해 신고한 사례
- ◆ 아파트 1채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
- ◆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함에도 형식상 세대분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
- ◆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

-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할 것이다.
- 특히,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.
- ‘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’임을 인식하고,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	책임자	과 장	오은정 (044-204-3401)
		담당자	사무관	허재호 (044-204-3412)
<협조>	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	책임자	과 장	남아주 (044-204-3471)
		담당자	사무관	이창훈 (044-204-3482)
<협조>	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임동 (044-204-2801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우 (044-204-2817)
<협조>	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준목 (044-204-2501)
		담당자	사무관	채상철 (044-204-2532)
<협조>	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	책임자	과 장	신강민 (044-200-2645)
		담당자	사무관	김순영 (044-200-2647)

참고자료

1.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5
2.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 6
3.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·납부방법 안내 7
4.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사례(국외주식 포함) 8
5.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11
6. 확정신고 관련 주요 Q&A 12
7. 국외주식 관련 주요 Q&A 13

참고 1

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

- (신고대상) '25년에 부동산,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¹⁾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²⁾하지 않은 납세자
 - 1) (부동산 등) 부동산·부동산에 관한 권리·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
(주식 등) 상장주식(대주주, 소액주주 장외거래),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
 - 2) 합산신고 시 누진세율·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
-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
- (신고기한) '25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'26년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·납부

<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>

-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며,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아니함

종류	자산 세부 항목	예시	예정신고		확정신고 대상	
			1회	2회		
				합산 ¹⁾		미합산 ²⁾
부동산 등	· 부동산(토지, 건물)	1	×	-		○
	· 부동산에 관한 권리(분양권 등)	2	○	○		×
	· 기타자산(회원권 등)	3	○		○	○
주식 등	· 국내주식 등 ³⁾	4	×	-		○
		5	○	○		×
		6	○		○	○
파생상품	· 국외주식	7	예정신고 의무 없음		○	
	· 파생상품	8	예정신고 의무 없음		○	

- 1) 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
- 2) 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
- 3) (신고대상) 상장주식(대주주 및 소액주주 장외거래), 비상장주식
- 4) 단, 국외주식과 손익통산을 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

참고 2

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

- (예정신고 미리채움)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내역*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

*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자산 및 소득금액 입력 시 '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'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, 양도일자, 취득일자,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

양도자산 및 소득금액

· 등기부등본 자료에서 부동산을 조회 및 추가하려면 [신고대상 부동산 불러오기] 버튼을 누르세요.
·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내역 조회 및 추가하려면 [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] 버튼을 누르세요.

신고대상 부동산 불러오기 | **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**

양도자산을 입력해 주세요.

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

-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신고서의 내용이 조회 됩니다.
- 예정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선택 후 [선택완료] 버튼을 누르세요.
- 양도가액, 취득가액 등은 예정신고시 제출시 금액임으로 확인 후 확정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.

선택	세목코드	소재지	양도물건종류	양도일자	취득일자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(기본세율) 2년이상 보유 -	서울특별시	일반주택	2025-01-17	2022-06-12

이전 | 닫기 | **선택완료** | 작성완료

- (세율 선택 도우미) 양도물건, 취득·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세율 자동채움 해주거나 대화형 질문·답변 통해 입력

양도자산 및 소득금액 입력/수정

전체 양도차액 [?] 261,340,590 원 | 비과세 양도차액 [?]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원 | 과세대상 양도차액 [?] 261,340,590 원

세율 선택 도우미

· 세율구분 -선택-

세율 자동채움

부동산 세율선택 도우미

양도소득세 세율종류를 찾아드립니다. 자산종류 : 주택

입력하신 내용에 따르면 테스트케인3님이 양도한 자산은
(기본세율) 2년이상 보유 토지·건물 등, 국외자산, 기타자산 적용 대상입니다.
이대로 적용하시겠습니까?

닫기 | **세율 적용하기**

대화형 질문·답변 통해 입력

부동산 세율선택 도우미

양도소득세 세율종류를 찾아드립니다. 자산종류 : 주택

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선택하세요. 1 2 3이상

추가로 보유한 분양권이 있나요? 예 아니요

나양도님이 양도한 주택은
(60% 1년~2년미만)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적용 대상입니다.

닫기 | **세율 적용**

- (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) 전자신고 가이드, 신고서 작성사례, 오류 사례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하여 과소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예방

* 홈택스 > 세금신고 > 양도소득세 신고 > 신고도움 자료 조회 >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

HomeTax 검색어를 입력하세요!

계산서·영수증·카드 | 증명·등록·신청·사업장현황 | 세금신고 | 납부·고지·환급 | 지급명세·자료·공익법인 |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| 상담·불복·제보

홈 > 세금신고 > 신고도움 자료 조회 > 양도

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「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」

신고서 작성 사례 | 전자신고가이드 | 자주묻는 질문 | 신고오류사례 | 제출증빙서류 확인

2025년 귀속 유형별 확정신고 사례1(조정지역 주택 2회 양도 후 예정신고하였으나 소득금액 미합산) >

2025년 귀속 유형별 확정신고 사례2(조정지역 주택 2회 양도 후 예정신고 무신고) >

참고 3

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· 납부 방법 안내

1.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

구 분	주 요 내 용
홈택스 (PC,모바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자: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○ 접근 방법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PC이용)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*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→ 양도소득세 신고(하기) → 정기신고 선택 (모바일이용) 국세청 손택스 * 세금신고 → 양도소득세 신고 → 양도소득세 일반신고(확정신고) 선택 ○ 이용 시간: 06:00~다음날 01:00(5.1.~5.31.) * 신고 마지막 날(6.1)은 24:00까지 운영
우편신고 방문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고기한: '25. 6. 1.(월) 18:00까지 ○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

2.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

구 분	주 요 내 용
홈택스 (PC) · 손택스 (모바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세청 홈택스·손택스 납부(공동·금융인증서 접속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⇒ '납부·고지·환급' → '세금납부' → '납부할세액 조회/납부' -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⇒ '납부·고지·환급' → '세금납부' → '자진납부' ○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*는 납세자가 부담 * 납부세액의 0.7%(체크카드는 0.4%) ○ 납부시간: 07:00 ~ 23:30(연중 무휴)
금융결제원 (인터넷지로, 카드로택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(www.giro.or.kr, www.cardrotax.kr) ○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납부 ○ 납부시간: 00:30 ~ 23:30(연중 무휴)
금융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납창구, CD/ATM, 인터넷뱅킹, ARS, 공과금수납기* *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○ 납부시간: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
세무서 (무인수납 창구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인수납창구* *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

참고 4

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(국외주식 포함)

① (부동산 합산신고) '25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·납부한 경우

○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

(천 원)

구 분	예정신고		확정신고
	주택('25.6월)	상가('25.8월)	
양도소득금액	180,000	60,000	240,000
기본공제	2,500	-	2,500
과세표준	177,500	60,000	237,500
세율-누진공제	38%-19,940	24%-5,760	38%-19,940
산출세액	47,510	8,640	70,310
기신고·결정세액	-	-	56,150*
납부할세액	47,510	8,640	14,160

* 기신고·결정세액(56,150천 원) = 47,510천 원 + 8,640천 원

○ 합산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

(천 원)

구 분	예정신고		확정신고
	주택('25.6월)	상가('25.8월)	
양도소득금액	180,000	△10,000	170,000
기본공제	2,500	-	2,500
과세표준	177,500	△10,000	167,500
세율-누진공제	38%-19,940	-	38%-19,940
산출세액	47,510	-	43,710
기신고·결정세액	-	-	47,510*
납부할세액	47,510	-	△3,800

* 기신고·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세액임

② (국내·국외주식 손익통산) '25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·납부하는 경우

○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*하여 확정신고

* 차손 금액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,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(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)

(천 원)

구 분	예정신고	확정신고		
	국내주식 (중소기업 대주주 외)	국내주식 (중소기업 대주주 외)	국외주식	계
양도소득금액	110,000	110,000	△67,000	43,000
기본공제	2,500	-	-	2,500
과세표준	107,500	-	-	40,500
세율	10%	-	-	10%
산출세액	10,750	-	-	4,050
기신고세액	-	-	-	10,750
납부할세액	10,750	-	-	△6,700

○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

(천 원)

구 분	예정신고	확정신고		
	국내주식 (일반법인 대주주)	국내주식 (일반법인 대주주)	국외주식	계
양도소득금액	342,500	342,500	100,000	442,500
기본공제	2,500	2,500	-*	2,500
과세표준	340,000	340,000	100,000	440,000
세율-누진공제	25% - 15,000	25% - 15,000	20%	20%, 25%
산출세액	70,000	70,000	20,000	90,000
기신고세액	-	-	-	70,000
납부할세액	70,000	-	-	20,000

* 국내·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(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)

③ (국내주식 합산신고) '25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·납부한 경우

○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

(천 원)

구 분	예정신고		확정신고
	'25.5월 양도 (1년이상 보유 대주주)	'25.8월 양도 (1년이상 보유 대주주)	
양도소득금액	150,000	200,000	350,000
기본공제	2,500	-	2,500
과세표준	147,500	200,000	347,500
세율-누진공제	20% - 0	20% - 0	25%* - 15,000
산출세액	29,500	40,000	71,875
기신고·결정세액	-	-	69,500
납부할세액	29,500	40,000	2,375

*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%, 3억 원 초과분은 25% 세율 적용

④ (파생상품 합산신고) 과세대상인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(예정신고 없음)

○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다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

*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(차손)은 합산(통산)하지 않음

(천 원)

구 분	확정신고		
	국내파생상품	국외파생상품	계
양도소득금액	200,000	△70,000	130,000
기본공제	-	-	2,500
과세표준	-	-	127,500
세율	-	-	10%
산출세액	-	-	12,750
기신고세액	-	-	-
납부할세액	-	-	12,750

* 기본세율은 20%(단일)이나,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10%(단일) 적용

참고 5

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

1] 주식

구분	내 용																
과세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국내주식) 상장주식 중 대주주*(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) 및 비상장주식 거래 * 코스피(1%·50억 원 이상), 코스닥(2%·50억 원 이상), 코넥스(4%·50억 원 이상) · (국외주식)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,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																
양도가액	·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																
필요경비	· (취득가액)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· (양도비용) 증권사 수수료 등																
양도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('20.1.1. 이후 양도분) *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으며,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차익의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 																
양도소득 기본공제	·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																
세 율	· 국내주식: 10%, 20%, 20%~25%, 30%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대주주(상장, 비상장)</th> <th colspan="2">소액주주(상장 장외, 비상장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중소기업</td> <td rowspan="2">20%~25%*</td> <td>중소기업</td> <td>10%</td> </tr> <tr> <td>중소기업 외</td> <td>중소기업 외</td> <td>20%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</td> <td colspan="2">*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%, 3억 원 초과분 25% 누진세율 적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대주주(상장, 비상장)		소액주주(상장 장외, 비상장)		중소기업	20%~25%*	중소기업	10%	중소기업 외	중소기업 외	20%			*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%, 3억 원 초과분 25% 누진세율 적용	
	대주주(상장, 비상장)		소액주주(상장 장외, 비상장)														
	중소기업	20%~25%*	중소기업	10%													
중소기업 외	중소기업 외		20%														
		*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%, 3억 원 초과분 25% 누진세율 적용															
· 국외주식: 20% (중소기업 주식은 10%)																	
· *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%, 3억 원 초과분 25% 누진세율 적용																	
신고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주식: 예정 및 확정 신고·납부 · 국외주식: 확정 신고로 종결(예정신고 없음) 																

2] 파생상품

구분	내 용
과세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국내)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, 주식워런트증권, 차액결제거래 · (국외) 장내파생상품(장외 일부 포함)
양도가액	·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
필요경비	· (취득가액)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· (양도비용) 증권사 수수료 등
장기보유특별공제	· 적용하지 않음
양도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과세대상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 ·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
양도소득기본공제	· 연 250만 원
세 율	· 10%(기본세율은 20%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)
공제·감면	· 해당없음
신고납부	· 확정신고로 종결 (예정신고 없음)

참고 6

확정신고 관련 주요 Q&A

1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?

-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, 자산의 취득·양도에 관한 부속 서류* 등이 필요합니다.

* (예시) 당해 자산의 매도·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, 자본적 지출액·양도비 증빙자료 (중개수수료, 신고서 작성비용, 법무사수수료 등) 등

2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확정신고 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?

- 확정신고 시 추가 반영 가능합니다. 추가로 공제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3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?

-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(차손)은 통산가능하나,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.

4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- 홈택스(손택스)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 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.

5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요?

-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
참고 7

국외주식 양도 관련 주요 Q&A

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외주식은 어떤 것인가요?

-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국외주식은 ①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과 ②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(국외 발행 예탁증권 포함)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합니다.

2 국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손익이 발생한 경우 다른 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?

- 같은 과세기간의 국외주식·국내주식*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(20년 양도분부터).

*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의 양도분에 한함

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?

- 배우자·직계존비속으로부터 국외주식을 포함한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내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, '25.1.1.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.(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)

4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?
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련 서식*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*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,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및 첨부서류 (주식거래내역서, 필요경비 증빙 등)

-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·제공한 「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」를 제출하는 경우 「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」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